

# 01 위원임기와 실태조사 등

구분	주요 내용
위원 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사회복지위원회(국무총리 소속) 위원 [법16①②]</li> <li>✓ ① 공무원 : 재임기간, ② 보궐위원 :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</li> <li>○ 시·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</li> <li>✓ 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, ② 공무원 : 재임기간</li> <li>★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(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) [지9]</li> <li>✓ 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, ② 공무원 : 재임기간</li> <li>○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</li> <li>✓ 공무원 : 재임기간</li> <li>★ 사회복지법인 감사 (연임가능) [법3]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</li> <li>✓ 보궐된 임원의 임기 :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</li> <li>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(한 차례만 연임가능) : 회장(1명), 부회장(3명), 이사(회장·부회장 및 사무총장 포함, 15명 이상 20명 이하), 감사(2명) [법5, 지20②]</li> <li>★ 사회복지법인 이사(외국인 이사) (연임가능) [법10④⑥⑦, 지2]</li> </ul>
실태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[법19②]</li> <li>★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[법6]</li> <li>★ 아동종합실태조사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아동복지법」 [법17⑮]</li> <li>○ 자립지원실태조사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아동복지법」</li> <li>★ 노인실태조사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노인복지법」 [법17]</li> <li>★ 장애실태조사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장애인복지법」 [법10②④⑦②0]</li> <li>★ 보육실태조사 → 교육부장관은~, 「영유아보육법」</li> <li>★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→ 여성가족부장관은~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[법11⑦②]</li> <li>★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→ 여성가족부장관은~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[법5⑥⑦]</li> <li>★ 가정폭력 실태조사 → 여성가족부장관은~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[법8]</li> <li>○ 성매매 실태조사 → 여성가족부장관은~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○ 성폭력 실태조사 → 여성가족부장관은~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신질환자 등 실태조사 → 보건복지부장관은~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공표, 국가는~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[법7⑫⑭⑰②]</li> <li>★ 재원조달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~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[법9②]</li> <li>★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, 국가는~, 「고용보험법」 [법18②②]</li> <li>→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</li> <li>★ 보호대상아동이 양육상황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~, 「아동복지법」 [법20②]</li> <li>→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[법14②]</li> <li>→ 국가는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를 [ ]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[ ]으로 실시~</li> <li>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[법2]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[ ]으로 점검~</li> <li>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[법2]</li> </ul>

		<p>★ 아동학대 예방교육, 「아동복지법」 [법⑩]</p> <p>→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[ ]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★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[법⑧]</p> <p>→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[ ]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/p>
		<p>★ 감사 실시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[행②]</p> <p>→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[ ]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
	[ ]년마다	<p>★ 사회복지시설 평가 : 3년마다 [지⑫, 행⑩⑨]</p> <p>→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★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: 3년마다 [법⑨]</p> <p>→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(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 1. 평가 주기 : 3년마다 실시할 것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↳ 법 제31조제1항 :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</p>
	[ ]년	<p>★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: [ ]년 [지⑫]</p> <p>→ 위탁계약기간은 [ ]년으로 한다</p>
	[ ]년마다	<p>★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, 「기초연금법」 [법⑭]</p> <p>→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[ ]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, 「국민연금법」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,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.</p>

사회복지 행정론	[ ]일 전까지	<p>★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[행⑩⑫]</p> <p>→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[ ]일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	[ ]월 [ ]일	<p>★ 결산서의 작성 제출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[행④]</p> <p>→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[ ]월 [ ]일까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제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사회복지 법제론	[ ]일 이내	<p>★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[ ]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 [법⑬]</p>
	[ ]일	<p>★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[ ]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 [법⑬]</p>
	[ ]일 이내	<p>★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[ ]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 [법⑨]</p>
	[ ]일 이내	<p>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[ ]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</p>
	[ ]개월 이내	<p>★ 사회복지법인 임원 보충 [법⑩⑩②]</p> <p>→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[ ]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</p>
	[ ]명	<p>★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: [ ]명을 초과할 수 없다. [지⑫]</p> <p>→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[ ]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[ ]개월 미만	<p>★ 일용근로자, 「고용보험법」 [법②]</p> <p>→ “일용근로자”란 [ ]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</p>	

## 02 법정 기념일 등 날짜

구분		주요 내용	
법정 기념일	기념일	지정 일자	근거법률 및 지정이유
	장애인의 날 [법⑦②⑬⑱]	4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복지법(제14조)</li> <li>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</li> </ul>
	새마을의 날 [지④]	4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(제8조의2)</li> </ul>
	어린이날 [법⑬]	5월 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복지법(제6조)</li> <li>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</li> </ul>
	어버이날 [법⑦⑱]	5월 8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복지법(제6조)</li> </ul>
	한부모가족의 날 [법②]	5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부모가족지원법(제5조의4)</li> </ul>
	입양의 날 [법⑦]	5월 11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양특례법(제5조)</li> <li>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</li> <li>한(1) 가정이 한(1) 아이를 입양해 새로운 가정(1+1)으로 거듭난다.</li> </ul>
	노인학대 예방의 날	6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복지법(제6조)</li> </ul>
	사회복지의 날 [법⑥⑦②⑬⑱]	9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사업법(제15조의2)</li> <li>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</li> </ul>
	치매극복의 날	9월 21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치매관리법(제5조)</li> </ul>
	노인의 날 [법⑥⑦②④⑬⑱]	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복지법(제6조)</li> <li>매년 10월 경로의 달, 세계 노인의 날 10월 1일</li> </ul>
	정신건강의 날	10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(제14조)</li> <li>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(週)를 정신건강주간</li> <li>세계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</li> </ul>
	아동학대예방의 날 [법②⑱]	11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복지법(제23조)</li> <li>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</li> </ul>
	자원봉사자의 날	12월 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원봉사활동기본법(제3조)</li> <li>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주간</li> </ul>
기타	날짜	주요내용	
	최저보장수준 공표 [법⑦]	<input type="text"/> 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기초생활보장법(제6조)</li> <li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<input type="text"/>월 <input type="text"/>일까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.</li> </ul>
	배분기준 공고 [법②]	<input type="text"/> 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(제20조)</li> <li>모금회는 매년 <input type="text"/>월 <input type="text"/>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자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li> </ul>
	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[지⑬⑱]	<input type="text"/> 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보장급여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li> <li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<input type="text"/>월 <input type="text"/>일까지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지⑬⑱]</li> </ul>
	<input type="text"/> 월 <input type="text"/>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·도의 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<input type="text"/>월 <input type="text"/>일까지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/ul>	

### 03 기본계획(종합계획)과 지역계획의 수립

구분	주요 내용
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수립 □년 마다	★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[법⑩⑫] →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□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	★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사회보장기본계획 [정⑭⑱, 법⑮]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□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★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장기요양기본계획 [법⑨]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□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□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★ 「아동복지법」 아동정책기본계획 [법⑰⑱⑳]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□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★ 「장애인복지법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[법㉒㉓]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□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★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[법⑩⑰⑱] →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□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지역계획 □년 마다	★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지역사회보장계획 [지⑭⑰⑱㉑㉒] →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□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계획 □	★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지역사회보장계획 [지⑱㉑㉒] →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□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★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연도별 시행계획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□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[법⑨] → 보건복지부장관은 □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 [법㉑]

## 04 행정행위 : 신고, 인가, 허가, 승인, 인증, 지정 등

구분	주요 내용
□	<p>★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발행 : 보건복지부장관의 □ [법⑦]</p> <p>→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~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·조건·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□을 받아야 한다.</p>
□	<p>★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사회적 기업 운영 : 고용노동부장관의 □ [법⑰⑱, 지⑳]</p> <p>→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□을 받아야 한다.</p>
□	<p>★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장기요양기관 지정 :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□ [법⑨⑩]</p> <p>→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★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장기요양기관의 시설·인력에 관한 변경 :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변경 □ [법⑨⑩]</p> <p>→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변경 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★ 「노인복지법」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운영 : 시·도지사 □ [법⑨]</p> <p>→ 시·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★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: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□ [법⑱]</p> <p>→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□할 수 있다.</p> <p>★ 「마을기업 시행 육성지침」 마을기업 지정 : 행정안전부 [법⑳]</p> <p>→ 시·도에서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□</p> <p>★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□ [법㉑]</p> <p>→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□할 수 있으며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</p> <p>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지역자활센터 지정 : 보건복지부</p> <p>→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□할 수 있다.</p>

- ★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: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[ ] [법⑫⑰⑳]  
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 ]에게 [ ]하여야 한다.
- ★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: [ ]에게 [ ] [법⑩]  
→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 ]에게 [ ]하여야 한다.
- ★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: [ ]에게 [ ] [법⑨]  
→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[ ]에게 [ ]하여야 한다.
- ★ 「아동복지법」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: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[ ] [법⑩⑰]  
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[ ]에게 [ ]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★ 「협동조합기본법」 협동조합 설립 : 시·도지사에게 [ ] [법⑭]  
→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[ ]에게 [ ]하여야 한다.
- ★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: [ ]에게 [ ] [법⑫⑱]  
→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[ ]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★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: [ ]의 [ ] [법⑦⑨]  
→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[ ]의 [ ]를 받아야 한다.
- ★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: [ ]의 [ ] [법②]  
→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[ ]의 [ ]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.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: [ ]에게 [ ]  
→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[ ]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★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: [ ]의 [ ] [지⑩]  
→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[ ]의 [ ]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.
- ★ 「영유아보육법」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: [ ]의 [ ] [법⑬]  
→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[ ]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★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·운영 : [ ]의 [ ] [법⑰]  
→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[ ]의 [ ]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★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합병 : 의  [법③]
  -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를 받아야 한다.
  - 법인은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
- ★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합병 : 의  [법⑬]
  -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시·도라 한다)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의 를 받아야 한다.
- ★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정신요양시설의 설치·운영 : 의  [법⑧]
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의 를 받아야 한다.

### 05 사회복지기본법, 사회복지급여법,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원회

구분		주요 내용	근거법	
사회보장위원회 [16][18][21]	소속	<input type="text"/> 소속 [법8]	「사회보장기본법」	
	역할	심의 · <input type="text"/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 1.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.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.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[법10] 4.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.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.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.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.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.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[법17] 12.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    동법 제26조(협의 및 조정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<b>위원회</b>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. [16, 정책론 14]                     </div> 13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		
	위원	구성		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명과 <input type="text"/> , <input type="text"/> , 여성가족부장관, <input type="text"/> 을 포함한 <input type="text"/>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[법20]
		위원장(1명)		국무총리
부위원장(3명)		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		
	임기	<input type="text"/> 년, ① 공무원 : 재임기간, ② 보궐위원 :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		
	사무국	<input type="text"/> 에 둠		

시·도 사회보장 위원회	누가? 어디에?	시·도지사는~ 시·도에~		
	역 할	심의· <input type="text"/>		
	위원	구 성	위원장 1명을 포함한 <input type="text"/> 명 이상 <input type="text"/> 명 이하의 위원	
		임명위촉자	시·도지사	
위원장		위원 중에서 호선		
	임 기	<input type="text"/> 년, 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, ② 공무원 : 재직기간		
지역사회 보장협의체	누가? 어디에?	시장·군수·구청장은~ 시·군·구에~		
	역 할	<input type="text"/> · <input type="text"/> ① '15.7.1. 이전 : 심의·건의 [지19]		
		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[지1820] 1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. 시·군·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[지19] 4. 시·군·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.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	
	위원	구 성	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[지20]	
		임명위촉자	시장·군수·구청장	
		위원장	위원 중에서 호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	
		임 기	<input type="text"/> 년 [지19], 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, ② 공무원 : 재직기간	
	실무 협의체	어디에?	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둠	
		구 성	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input type="text"/> 명 이상 <input type="text"/>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[지20]	
		임명위촉자	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	
위원장		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		
임 기		<input type="text"/> 년, 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, ② 공무원 : 재직기간		
실무분과		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분과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		
읍·면· 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	누가? 어디에?	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~ 읍·면·동에~		
	역 할	업무 지원		
		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 [지17] 1.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다문화가족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.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.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		
	위원	구 성	읍·면·동별로 각 <input type="text"/> 명 이상	
위원장		위원 중에서 호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읍장·면장·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		
임 기		<input type="text"/> 년 (연임가능), 공무원 : 재직기간		

「사회복지급여  
이용·제공 및  
수급권자  
발굴에  
관한 법률」

<b>운영 위원회</b>	누가? 어디에?	시설장은~ 시설에~	「사회복지 사업법」
	역 할	심의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b>[법⑩]</b> 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 2.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 <b>[지⑨]</b> 3.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<b>[지⑩]</b> 4.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.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.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	
	구 성	위원장을 포함하여 <input type="text"/> 명 이상 <input type="text"/>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<b>[지⑨]</b>	
	임명위촉자	시장·군수·구청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시설의 장 <b>[법⑩]</b> 2. 시설 거주자 대표 <b>[법⑬⑭]</b> 3.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<b>[법⑩]</b> 4. 시설 종사자의 대표 5. 해당 시·군·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
	위원장	위원중에서 호선	
임 기	<input type="text"/> 년, 보궐위원 :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		

## 06 공공부조법, 사회보험법 상 위원회

구분		주요 내용	근거법	
생활보장 위원회	어디에?	보건복지부와 시·도 및 시·군·구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	
	역 할	<input type="text"/> · <input type="text"/> [법②]		
	중앙 생활보장 위원회	심의 · 의결 사항		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(이하 “중앙생활보장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.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.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.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. 급여의 종류별 누락·중복,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.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·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	구 성	위원장을 포함하여 <input type="text"/>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[법⑦]		
	위원장	<input type="text"/>		
의료급여 심의 위원회	어디에?	보건복지부, 시·도 및 시·군·구	「의료급여법」	
	역 할	<input type="text"/>		
	중앙 의료급여 심의위원회	구 성 · 위원장		위원장을 포함하여 <input type="text"/>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<input type="text"/>
긴급지원 심의 위원회	어디에?	시·군·구	「긴급복지 지원법」	
	역 할	심의· <input type="text"/> [법⑥]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. 1.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.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    동법 제14조(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)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법⑩]                     </div> 3.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.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	
	구 성	위원장 1명을 포함한 <input type="text"/>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		
	임명위촉자	시장·군수·구청장		
	위원장	시장·군수·구청장		

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[법②]	어디에?	<input type="text"/> 소속	「국민건강 보험법」
	역 할	<input type="text"/> . <input type="text"/>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심의 에 한정한다) 2.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.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[정⑩] 4.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[정⑪] 5.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.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업무상질 병판정위 원회	어디에?	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 [정⑫]	「산업재해보상 보험법」
	역 할	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	

## 07 사회복지법 상 각종 위원회

근거법	위원회	주요 내용	
아동복지법	아동정책조정위원회	어디에?	<input type="text"/> 소속 [법8⑦⑧⑩]
		구 성	위원장을 포함한 <input type="text"/>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		위원장	국무총리
	아동복지심의위원회 [법8]	누가? 어디에?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~ 그 소속으로~
	<input type="text"/> [법16②]	어디에?	시·군·구
		내 용	명예직,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장애인복지법	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	어디에?	<input type="text"/> 소속 [법8⑩]
		역 할	심의·조정
	장애판정위원회	어디에?	보건복지부 [법2⑤]
		역 할	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(査定)에 관한 업무 담당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	사회복지공동모금회 [지20②]	설 립	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(이하 "모금회"라 한다)를 둔다. [지20] ② 모금회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<input type="text"/> 으로 한다. [법11, 지19, 실24]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<input type="text"/> 를 받아登記함으로써 설립된다.
		임 원	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③ 이사(회장·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) <input type="text"/> 명 이상 <input type="text"/> 명 이하 [법17] ④ 감사 2명 임원임기 <input type="text"/> 년 (한 차례만 연임가능) [법5, 지20②]
		사무조직	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input type="text"/>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. [지20]
	분과실행위원회 [법20]	역 할	모금회의 기획·홍보·모금·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
		종 류	기획분과실행위원회, 홍보분과실행위원회, 모금분과실행위원회, 배분분과실행위원회
		구 성	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input type="text"/>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☺ 다만,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<input type="text"/>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[법20]
		임 기	<input type="text"/> 년 (연임가능), 다만,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가능
	다문화가족지원법	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	어디에?
역 할			심의·조정 ★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[법10]

# “지금부터 시험일까지” 가장 좋은 공부방법은?

## 01.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벼락치기하시고자 할 경우

- Step · 먼저 「**족집게 벼락치기 이론편**」으로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(20강)을 들으세요.  
 ※ 유료 강의듣기 ☞ 프라임법학원 <https://socialworker.primeedunet.com/>
- Step · 「**족집게 벼락치기 문제편**」으로 대표기출 200문제를 풀어보세요.  
 ※ 무료 강의듣기 ☞ 유튜브채널 <https://www.youtube.com/김진원사회복지학>
- Step · 할 수 있으면, 추가적으로 「**핵심기출 100제**」를 풀어보세요.



## 02 이론공부가 되신 경우에는 이제 실전연습하면서 구멍메꾸기를 하세요.

- 추천 「**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**」에 장착된 OMR 카드로 실전처럼 풀어보세요.  
 추천 「**족집게 모의고사(5회분)**」에 장착된 OMR 카드로 실전처럼 풀어보세요.  
 ※ 족집게 모의고사는 출제가능한 논점을 최대한 포함해서 만든 문제입니다.  
 ※ 틀린 문제는 공부한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으로 해당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보완하세요.



## 03 시험 직전 1주일 동안 빈출지문을 최종 점검하세요.

- 최종정리 핵심체크 「**기출족보 OX**」를 일주일 동안 풀어보세요.  
 ※ 「기출족보 OX」책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.  
 ※ 시험 직전 이 책을 보면서 공부내용을 상기시키고 핵심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.



### “김진원 OIKOS 사회복지사1급 밀착관리서비스 & 소통 · 정보공유 · 무료강의&자료제공”

- 네이버밴드(<https://band.us/@oikos>)
- 네이버카페(<https://cafe.naver.com/tonghapwelfare>)
- 유튜브(<https://www.youtube.com/김진원사회복지학>)
- 전화상담 : 010-3182-1385 / 카톡상담 ID : kjwwelfare